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92호 2017. 8. 28(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3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4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 4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4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52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8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9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0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0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8.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도로)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6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6	15	집산 도로	285 (14)	광로 3-27	인천세무고등학교, 당하동 943-6	일반 도로		'99.6.23	
변경	중로	2	166	15	집산 도로	282 (11)	광로 3-27	인천세무고등학교, 당하동 943-6	일반 도로		'99.6.23	

※()는 금회 사업구간(세무고등학교 진입도로) 연장임.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66호선	중로 2-166호선	◦선형변경 및 연장변경 L = 285(14)m → 282(11)m	◦인천세무고 이전사업시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오차 ◦당하지구 경계와 축척상의 오차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선형 불부합에 따른 연접한 중로2-166호선 선형 및 연장변경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6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6호선)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6호선) 사업(미개설구간)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있음)
 - 도로시설 : (당초)B=15m, L=14m, A=207m²(금회 사업구간)
(변경)B=15m, L=11m, A=165m²(금회 사업구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중로	2	166	15	285	271	14	-	
변경	중로	2	166	15	282	271	11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학교법인 봉선학원 이사장 이재옥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33(십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 2015. 06. 29. ~ 2017. 0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3번참조(상세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

편입토지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계	기정						15,862	207			
	변경						15,862	165			
1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2-6	전	67	1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2-6	전	67	-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2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19	구	112	102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19	구	112	97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3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6	잡	52	52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6	잡	52	47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4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10	답	436	24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10	답	436	8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5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214-1	임	15,195	28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214-1	임	15,195	13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8.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서로 16-52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8. 2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7-08-2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4-4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16-52 (경서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86-6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18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반영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7-1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74번길 32 (원당동, 대신택배 인천원당점)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86-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5번길 12 (마전동)	20081231	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65-2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22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25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16-1 (경서동, JJ하우스)	20130730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97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2번안길 24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3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1번길 52 (석남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64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1번길 78 (석남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02-8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길 13 (가정동)	20141015	염곡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77-1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24-14 (경서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1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45번길 51 (석남동)	20151113	북항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13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실시계획(변경) 열람 ·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명:연구시설, 사업명:환경산업연구단지 내 건축물 증축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예정부지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 명칭 :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건축물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비 고
당초	180,000㎡	20,822.94㎡	44,237.42㎡	지하1층/지상4층
변경	180,000㎡	22,304.41㎡	46,064.92㎡	지하1층/지상4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경서동	공유수면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예정부지내)		180,000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권자	매립면허 권리분할 협약

7.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 4층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8.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권한위임·위탁 사안

규정(안 제4조)

라.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안 제5조)

-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부 가능

마.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안 제6조)

- 교부금전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금고에 의무적으로 예탁

바.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7조)

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이 조례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인천광역시서구 구세 징수조례」로 이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권한위임·위탁 사안 규정(안 제4조)

라.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안 제5조)

-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부 가능

마.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안 제6조)

- 교부금전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금고에 의무적으로 예탁

바.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7조)

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이 조례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인천광역시서구 구세 징수조례」로 이관함.

3. 참고사항

가. 개정안 : “별지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서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서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2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세기본법」</p> <p>제2조(정의)</p> <p>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위임 등)</p> <p>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p> <p>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p> <p>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p> <p><input type="checkbox"/> 「자동차등록령」</p> <p>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p> <p><input type="checkbox"/> 「자동차관리법」</p> <p>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p> <p><input type="checkbox"/>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p> <p>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p>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별첨”</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계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2016.12.27개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5.6.4.>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4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8.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 기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과 용어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과세대장의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는 경

- 우에는 대장을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다.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안 제5조)
 - 라. 부과외 취소 및 변경 등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구세 환급금의 처리, 지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9조)
 - 바. 납세담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규정(안 제10조)
 - 사.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이 규칙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인천광역시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 기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과 용어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안 제3조)
- 나.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과세대장의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을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다.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안 제5조)
- 라. 부과 취소 및 변경 등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구세 환급금의 처리, 지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9조)
- 바. 납세담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규정(안 제10조)
- 사.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이 규칙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인천광역시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

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5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6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7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8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9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구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인)
담당		정				리		부		등	재	(인)
담당자		총				당		통		지	서	(인)
		통				지		서		번	호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 입 항 목	구 분	세 입 연 도	세입과목				환 급 금 총 액	과 오 납 연 월 일	환급자			
			관	항	목	과 세 번 호			주 소	성 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 분	세 입 연 도	세입과목				미 납 총 액	총 당 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 세 번 호			주 소	성 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input type="checkbox"/>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업무의 일부대행) <input type="checkbox"/>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제65조(담보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별첨”</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계 법령 발췌 사항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 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 · 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 · 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8.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선정 근거 규정(안 제3조)
 - 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이 조례로 이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안

1. 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선정 근거 규정(안 제3조)
- 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이 조례로 이관함.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 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세징수법</p> <p>제105조(채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4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8.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안 제3조)
 - 나. 각종 대장등의 작성·비치 근거 규정(안 제4조)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을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다.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안 제5조~안 제6조)

- 라.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안 제7조~안 제9조)
- 마.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안 제10조)
- 바. 세입징수 결과제출 및 세입 마감(안 제11조~안 제12조)
- 사. 미수납액의 이월, 결손처분 관련 사항(안 제13조~안 제16조)
- 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자.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안 제18조)
- 차.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이 규칙으로 이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안 제3조)
- 나.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근거 규정(안 제4조)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을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다.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안 제5조~안 제6조)
- 라.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안 제7조~안 제9조)
- 마.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안 제10조)
- 바. 세입징수 결과제출 및 세입 마감(안 제11조~안 제12조)
- 사. 미수납액의 이월, 결손처분 관련 사항(안 제13조~안 제16조)
- 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자.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안 제18조)

차.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이 규칙으로 이관함.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구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구세신고서

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구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구청장이 구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결정결의서	
2	결정액 통지부	
3	세입 결정액 통지서	
4	수납부	
5	징수부	
6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7	이월 체납액 정리부	
8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9	결손처분표(갑,을)	
10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	과표액	과세물건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납세자명	세목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p align="center">주거 확인</p> <p>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p> <p align="center">년 월 일</p> <p align="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align="center">재산 확인</p> <p>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p> <p align="center">년 월 일</p> <p align="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align="center">생활상태 확인</p> <p>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3. 기타</p> <p align="center">년 월 일</p> <p align="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align="center">재조사 확인</p> <p>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p> <p align="center">년 월 일</p> <p align="center">소속 직급 성명</p>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p>「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p> <p><input type="checkbox"/>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49조(금고업무의 일부대행)</p> <p><input type="checkbox"/>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제106조(결손처분)</p>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별첨”</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계 법령 발췌 사항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 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 · 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 · 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8.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른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해당 없음”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생략)</p> <p>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u>같은 법 제51조</u>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지 <u>방세기본법」 제49조</u>----- ----- <u>같은 법 제50조</u>----- ----- ----- -----.</p>
<p>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생략)</p> <p>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u>같은 법 제51조</u>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지방 <u>세기본법」 제49조</u>----- ----- <u>같은 법 제50조</u>----- ----- ----- ----- -----.</p>
<p>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생략)</p> <p>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p>	<p>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세기본법</p> <p>제49조(수정신고)</p> <p>제50조(경정 등의 청구)</p> <p>제139조(납세관리인)</p> <p style="text-align: center;">“내 용 별 침”</p>
관련법규 정비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 당 없 음”</p>
관련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해 당 없 음”</p>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1조)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8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른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1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해당 없음”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구 재정관리”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관리”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기간만료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회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60일전”을 “6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0일전”을 “50일 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날로”를 “날”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관업무”를 “소관 업무”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관리----- -----.</p>
<p>제2조(금고지정)① ~ ② (생략)</p> <p>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u>기간만료일</u>로 한다.</p>	<p>제2조(금고지정)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기간 만료일</u>----- -----.</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생략)</p> <p>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u>관련분야</u>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구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현행과 같음)</p> <p>① ----- ----- ----- <u>관련 분야</u>----- ----- -----</p>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② ~ ⑤ (생략)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정절차)① ~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그 심사결과를 금고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람은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의를 시
작하고-----
-----.

제6조(지정절차)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련 기관-----

----- 60
일 전-----
-----.

<p>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기간 만료 <u>50일전까지</u> 금고를 지정한다.</p>	<p>④ ----- ----- ----- <u>50일 전</u> ----- -----.</p>
<p>⑤ 삭 제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① (생략)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u>의한</u>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① (현행과 같음) ② ----- ----- <u>날</u> ----- ----- <u>따라</u> ----- -----.</p>
<p>③ (생략) 제9조(수당 등) (개정 2014. 3.10.) 심의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u>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u>소관업무와</u>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 ----- ----- <u>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u> ----- -----. ----- <u>소관 업무</u> ----- -----.</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 - <u>필요</u> ----- -----.</p>

관계 법령 발췌 사항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8.28~9.18.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2011.9.26.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구 전역이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고 농경용·농가부업용·애완용 가축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주거밀집지역 인근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는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생활여건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사육제한 예외규정인 농경용·농가부업용·애완용 가금류 사육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위해요인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신설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의 종류 중 사육제한을 위한 가금류의 종류를 닭, 오리, 메추리로 명확히 함.
- 나.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중 가축사육제한 예외 규정인 “5마리 이하의 가금류” 를 삭제
 - 제3조제2항제5호 중 “애완용 가축” 을 “애완용 가축(가금류 제외)” 로 하고 “방범용 개 및 조류” 를 “방범용 개” 로 함.
- 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 신설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인근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한 바,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다음 각 호를 신설함.
- 제1호 하천 등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2호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제3호 인·수공통의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8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참조 : 환경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 (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환경보전과
- 2) 전화 : 032-560-4897
- 3) 팩스 : 032-560-2751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가축사육의 제한 등) 근거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2011.9.26.일자 「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구 전역을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 하였으나, 농경용·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 및 애완용 가축은 사육제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주거밀집지역 인근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 하는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구민의 생활여건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사육제한 예외규정인 농경용·농가부업용·애완용 가금류 사육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 아울러 일부 기존가축사육지 주변으로 환경위생의 위해로 인한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현 조례 규정상 위해 요소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가축 사육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위해요인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신설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의 종류 중 사육제한을 위한 가금류의 종류를 닭, 오리, 메추리로 명확히 함.

나.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중 가축사육제한 예외 규정인 “5마리 이하의 가금류”를 삭제
- 제3조제2항제5호 중 “애완용 가축”을 “애완용 가축(가금류 제외)”로 하고 “방법용 개 및 조류”를 “방법용 개”로 함.

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 신설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다음 각 호를 신설함.

제1호 하천 등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3호 인·수공통의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금류”란 닭, 오리, 메추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와 5마리 이하의 가금류”를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축, 방범용 개 및 조류”를 “가축(가금류 제외), 방범용 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천 등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인·수공통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가금류”란 닭, 오리, 메추리를 말한다.</u></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생략)</p> <p>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2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u>소·돼지·말·젓소·양·사슴·개와 5마리 이하의 가금류</u></p> <p>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u>가축, 방법용 개 및 조류</u></p> <p>6.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소·돼지·말·젓소·양·사슴·개</u></p> <p>5. ----- ----- <u>가축(가금류 제외), 방법용 개</u></p> <p>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